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11 발의연월일: 2022. 12. 1.

발 의 자: 강선우·남인순·박광온

서영석 · 송옥주 · 안규백

윤영찬 • 진성준 • 한정애

허 영·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 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	제10조(실태조사) ①
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	
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
	한 차별 실태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